

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이성배, 권영희, 김제리,
김화숙, 이병도, 고병국,
한기영, 문병훈, 이정인,
송명화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평가와 개선 권고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을 구현하고,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,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·제도 개선을 추가함(안 제4조)
- 나.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(안 제7조, 제8조)
- 다.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평가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정비를 권고하도록 함(안 제14조)

라. 「소비자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변경된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을 조례에 반영함
(안 제2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소비자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·제도 개선

안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안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시는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위원회의 기능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11조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
3.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
 4.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포 여부에 관한 사항
 5. 시민, 소비자단체, 연구·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에 제1항제3호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안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5조(소비자단체의 등록 등)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(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)
 2.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
 3.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·수지예산서, 전년도의 결산서
 4.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및 상근인력 5명 이상
 5. 지부 현황(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6. 회원명부
 7.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

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명칭
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3. 대표자 성명
4. 주된 사업내용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시의 책무) 시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시의 책무) 시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동일)</p> <p>4. <u>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·제도 개선</u></p>
<p>제7조(소비자에의 정보제공) 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소비자에의 정보제공) ① ~ 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<u>시는 보이스포싱 등 금융사기 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8조(소비자의 능력향상) ① (생략)</p> <p>② 시는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, 소비자단체, 연구·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</p>	<p>제8조(소비자의 능력향상) 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<u>시는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시는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, 소비자단체, 연구·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</p>

<p>할 수 있고,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할 수 있고,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
<p>제14조(위원회의 기능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3.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</p> <p>4. 시민, 소비자단체, 연구·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1호부터 <u>제3호</u>까지를 제외한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위원회의 기능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<u>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 사항</u></p> <p>4.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</p> <p>5. 시민, 소비자단체, 연구·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에 제1항제3호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1호부터 <u>제4호</u>까지를 제외한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</p>
<p>제25조(소비자단체의 등록 등)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<u>다음 각 호</u></p>	<p>제25조(소비자단체의 등록 등)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<u>영 제23조제</u></p>

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소비자단체 등록(변경)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소재지
4. 대표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및 전화번호
5. 설립연월일
6. 회원의 수(지부의 수를 포함한다)
7. 주요 사업내용
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정관(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)
2.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장비와 사무실
3.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
4. 재정 상황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(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)
2. 해당 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
3.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·수지예산서, 전년도의 결산서
4.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및 상근인력 5명 이상
5. 지부 현황(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6. 회원명부
7.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와 이유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알려야 한다.

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명칭
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3. 대표자 성명
4. 주된 사업내용

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 <삭제>

호(지부의 수에 한한다) 및 제7호
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
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
내에 시장에게 별지서식 신청서를
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
여야 한다.